

제주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0가단57563(본소), 2020가단70962(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원 고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민재, 최승만, 김희성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산운
담당변호사 문건식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3.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28,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2.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분의

4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주위적으로 원고 B에게,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84,295,2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A는 피고에게 110,23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와 피고는 제주도 D에서 E, F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등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G 관련 지분 양도

1) 피고는 E와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G’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의 지분 비율을 55%로, E의 지분 비율을 45%로 각 정하고, 지분비율대로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전세권과 영업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5.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의 피고 지분 중 절반인 27.5%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되, 원고 B에게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동업계약 지분 중 27.5%를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20. 3.경 이 사건 카페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H 관련 정산 합의

1) 원고 A와 피고는 I회사 및 주식회사 H를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 A와 피고는 2013. 10. 7. 피고가 I회사의 지분과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원고 A는 주식회사 H의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주식회사 H의 나머지 채무를 242,031,182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그 중 절반인 121,015,591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

3) 원고 A와 피고는 2015. 8. 25. 위 2)항 기재 정산금 121,015,591원에서 피고가 그때까지 지급한 것으로 계산된 31,809,535원을 공제한 나머지 89,206,056원을 주식회사 H와 관련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으로 확인하였다.

4) 그런데 원고 A는 주식회사 H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7. 2. 7.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 채무 합계 192,859,649원을 변제한 후 경매절차 등에서 일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134,634,649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관련 민사판결

1) 원고 A는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이하 'J조합'라고 한다) 관계에 있었다.

2) 원고 A가 피고 등을 상대로 J조합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8252,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등은 J조합의 원고 A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원고가 2014. 2. 8. 펜션제작비로 J조합 자금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계항변이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7.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원고들 중 1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조합원이므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들 중 1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지분을 10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 485,033,835원 중 일부인 1억 원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금 5,500만 원¹⁾ 및 2018. 11.부터 2020. 1.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 7,723,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H과 관련한 이 사건 정산금 89,206,056원 및 이 사건 카페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또는 B에게,²⁾ 합계 216,929,875원(= 1억 원 + 7,723,819원 + 2,000만 원 + 89,206,056원)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132,634,649원을 공제한 나머지 84,295,226원(= 216,929,875원 - 132,634,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카페 수익금으로 1,276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 2016. 4. 17. 채무이행각서에 의한 52,045,056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9,206,056원에서 1,27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446,056원(= 89,206,056원 - 1,276만 원)을 위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권채권의 원금으로 순차로 상계하고 남은 110,223,639원(= 76,446,056원 - 52,045,056원 - 134,634,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이 사건 동업계약 지분 양수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성립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피고가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자신의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조합원인 E가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또는 B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조합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정산금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소 중 정산금과 공사비 청구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채권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원고 A와 피고가 2015. 8. 25. 이 사건 정산금을 89,206,056원으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공사비 채권

원고 A는 'J조합 통장에서 펜션시공비로 인출된 돈 4,000만 원 중 절반은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가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위 4,00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2. 9. J조합통장에서 '펜션시공비' 및 '펜션연구개발비'로 각 4,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원고 A와 피고는 '펜션 R&D비용(펜션연구개발비)'를 이 사건 카페의 공사에 사용하고 그 비용 절반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 A가 J조합에 펜션시공비를 반환할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펜션연구개발비 중 절반을 J조합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 A에게 펜션시공비 중 절반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정산금 89,206,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수익금으로 이 사건 정산금 중 1,276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9. 5.부터 2016. 4. 9.까지 사이에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8. 25. 원고 A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카페 수익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입출금통장내역에 각 '수익금'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남기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3. 10. 7.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금의 변제에 대하여 '추후 함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먼저 채무 감액한다'고 합의하였고 2015. 8. 25.에도 '이 사건 정산금을 기존 합의대로 상환한다'고만 정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 양도담보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 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은 당연히 이 사건 정산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으로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무조건 이 사건 정산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6.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52,045,056원 및 201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이자'로 확정하는 한편 2016. 4. 18.부터 받을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9,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금채무는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7. 11.경 이미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

1) 자동채권의 존재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주식회사 H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여 134,634,649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효과

수동채권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 및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약정일인 2015. 8. 25.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늦어도 마지막 대위변제일인 2017. 2. 10. 각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어 2017. 2. 10.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7. 23.자 답변서가 원고 A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8.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2. 10.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결과 원고 A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남지 않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45,428, 593원(= 134,634,649원 - 89,206,056원)이 남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본소 청구도 이유 없고,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남은 45,428,593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 A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인 2021. 1. 5.부터 원고 A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1) 원고들은 지분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처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정산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별도로 청구취지에서 감축된 금액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공사비 및 주식회사 H 관련 정산금에 대하여는 원고 A만이 위 각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원고 B 역시 원고 A와 같은 금액을 구하고

있다.